

이 보도자료는 6. 19.(일) 09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대구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우남준

전화 053-740-4352 / 팩스 0502-193-5504

보도자료

2022. 6. 19.(일)

제 목

가출 대학생에게 비인간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폭력 사범 4명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관련사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 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(제10조 제2항)

-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(부장검사 정현승)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여, 피고인 등 5명이 가출한 대학생을 상대로 담배공초를 먹이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히거나 밀대 자루로 수십 회 때리는 등 집단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확인해 5. 27.(금) 주범 2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한 후 6. 14.(화) 4명을 기소(구속 2명, 불구속 2명)하고, 1명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결정하였음

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 및 주요 죄명

순번	피고인	주요 죄명	처분
1	A○○ (20세, 무직)	특수상해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(공동상해, 공동강요, 공동감금, 공동폭행) 등	구속 기소
2	B○○ (20세, 자영업)		불구속 기소 ※ 이미 별건으로 구속되었음
3	C○○ (21세, 무직)		
4	D○○ (20세, 대학생)	폭행	불구속 기소

※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 F○○(20세, 대학생)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에서 대구로 가출하도록 유도

※ 공범인 피의자 E○○(20세, 무직)의 특수상해 등은 같은 날 기소중지

● **주요 공소사실 요지**

순번	피고인	주요 공소사실 요지
1	A○○	- '21. 7.경 두 차례에 걸쳐 스테인리스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습 회 때림 [특수상해, 폭력행위처벌법위반(공동상해)]
2	B○○	- '21. 7.경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저수지에 빠뜨린 후 저수지를 가로질러 헤엄치게 함 [폭력행위처벌법위반(공동강요, 공동폭행)]
3	C○○	- '21. 8.경 성냥불로 피해자의 음모를 불태우고,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함 [폭력행위처벌법위반(공동폭행, 공동강요)] - '21. 8.경 담뱃불로 피해자의 온몸에 화상을 입힘 [특수상해]
4	D○○	- '21. 7.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림 [폭행]

II 주요 수사 경과

- '21. 8. 피해자 부친 112 신고로 수사 개시
- '22. 3.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음
- '22. 4.~5. 관련 사건 이송 및 병합 수사
 - ※ 범죄의 중대성 및 집중 수사 필요성 확인하여 타 검찰청으로부터 E○○의 특수공갈미수 등 사건을 이송 받아 병합 수사
- '22. 5. 27. 대구지법, A○○, B○○ 각 구속영장 발부
- '22. 6. 14. 대구지검, A○○, B○○ 각 구속 기소 등 사건 처분

III 수사 결과

- 수사 결과,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출을 유도한 후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하던 중 내성적인 피해자가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됨
-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, 타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 받아 집중 수사에 착수함

-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신뢰관계인 동석 하에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고인들을 5회 조사하는 등 전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,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 주범 2명을 구속하였음
-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및 병원비를 지원함

IV

향후 계획

- 향후 재판 절차에서 **증인보호절차***를 통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
 - * 증인 법정 동행,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퇴정 조치 등
- 검찰은 앞으로도 **집단 폭력범죄에 엄정 대처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**하고, 정성스러운 사건 처리로 국민들께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맡겨 주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☑

검찰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△ 치료비, △ 긴급 생계비, △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불의의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콜(1577-2584), 대구지검 원스톱(One-Stop) 범죄피해자 지원센터(053-740-4450)에서 상담·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